

初步者教室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 主要內容(1)

1. 工業所有權의 意義

工業所有權이란一般的으로‘特許’라고 부르고 있는特許權과 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商標權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工業所有權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프랑스에서發明者 및 工藝家 또는 著作者의 權利를 모두 합해 精神的所有權 및 知的所有權이란 뜻으로 사용된 말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말이 產業所有權이란 뜻의 英語로 바뀌어 日本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본래의 뜻인 產業所有權이 아닌 工業所有權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工業所有權이라고 해서 工業分野에만 관련되는 權利만은 아니다. 工業分野 이외에도 商業·農林業·水產業·礦業등 모든 產業分野에 걸쳐 관련되어 있다.

이는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第1條 第3項에도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工業所有權은 아주 넓은 意義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工業 및 商業뿐만 아니라 農產業 및 採取產業 예를 들면 곡물 업연초·과실·가축류·광물·광천·맥주·화초 곡분등의 모든 製造品 또는 天然產物에도 適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工業所有權이라고 하기

보다는 ‘產業所有權’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工業所有權이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아니다.

그런데 工業所有權은 人間의 머리에서 생겨 난 發明과 考案이 權利化된 것이므로, 그 이름은 工業所소權이라고 하지만 動產이나 不動產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無體의 財產이기 때문에 無體財產權이라고도 한다.

權利의 대상이 無體라고 하는 意味에서는 商號權·營業權·著作權도 같은 無體財產權이므로 工業所有權은 無體財產權의 한 태두리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外國에는 著作權까지도 特許廳에서 관장하는 國家도 있다.

한편 工業所有權은 다른 어떠한 分野보다도 國際性이 강한 制度로서 다른 制度에 비해 國家間에 制度上의 차이점이 아주 적다. 다만 各國의 國益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특히 工業所有權은 出願과 登錄에 의해 여러 國家에서 保護를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國家의 利益을 가져오는 技術의 輸出에 있어서 그것이 工業所有權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단순한 用役輸出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技術의 導入을 위해 해마다 아주 많은 外貨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처럼 技術의 導入을 위해 그 對價로서 지불하는 로열티(Royalty·우리말로는 特許權 또는 商標權 使用料)만 보더라도 工業所有權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美國이 자기 나라 國民의 商標의 保護와 物質特許制度의 채택 등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도록 많은 압력을 해온것만 보더라도 工業所有權은 國內뿐만 아니라 國際的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질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 工業所有權의 중요성을 깨닫고, 工業所有權에 관한 知識을 넓혀서 이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工業所有權이란, 國家 產業發展의 基盤을 단단히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技術과

商品의 國際競爭力を 실질적으로 키워 나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國家의 수록 技術과 產業이 發展하였고, 반대로 產業이 發展할 수록 工業所有權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立證이 되고 있다.

2. 工業所有權을 保護하는 趣旨

工業所有權은 일정한 技術的 創作을 한 사람이나 그 技術內容을 國家 및 社會에 公開 및 提供하는 對價로 國家는 이들 創作者에게 그 創作內容을 일정 기간 獨占的으로 사용하여 收益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 주는데, 이렇게 부여된 權利가 곧 工業所有權이다.

즉 產業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技術的 創作을 하는데는 많은 精神的 및 肉體的 努力과 經費 및 時間이 所要되는데, 이러한 創作技術을 아무런 對價의 提供 없이 公開하여야 한다면 새로운 技術開發에 時間과 努力を 消費하려고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自己의 創作技術을 社會에 公開하여 관린 產業界의 技術의 進步와 向上 그리고 國家 產業發展에 기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保護함으로써 技術開發 및 公開를 促進시킬 必要가 있다.

이러한 必要에 따라 國家는 創作者와 國民들이 함께 利益을 받을 수 있도록 創作者에게는 自己의 開發技術을 일정기간 獨占的으로 사용하여 技術開發에 소요된 費用과 努力を 그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여 주고, 一般國民은 工業所有權의 許與를 전후하여 公開된 創作技術을 스스로의 技術開發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創作技術을 누구나 아무런 對價의 지불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創作者와 一般國民을 함께 保護한다는 것이 工業所有權을 보호하는 趣旨이다.

다만 商標權은 特許權과 實用新案權 및 意匠權과는 달리 創作에 의해 權利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商標 使用者에게 그 使用狀態를 權

利로서 일정하고 獨占使用하도록 하여 他人의 模倣과 盜用등을 排除하여 좀으로써 그 商標使用者가 商標를 매개로 구축하는 市場的 地位, 즉 信用을 保護해 주어 業務上의 信用이 維持 및 增進되고 市場秩序가 確立되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처럼 商標의 獨占的 使用을 權利로서 保護함으로써 商標使用者는 自己 信用의 유지를 위해 自己 商品의 品質을 유지 및 保證해 주게 되며, 그에 따라 一般需要者는 安心하고 商品을 購買할 수 있는 利益이 있고, 不正競爭의 소지를 없애주어 商品의 流通秩序를 安定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間接的으로는 좋은 品質의 商品을 만들 수 있도록 技術開發을 促進시키도록 하는데에 商標權 保護의 趣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工業所有權은 궁극적으로는 國家 產業發展이라는 公益을 추구하는 制度이기 때문에 創作者가 創作技術을 社會와 一般國民에게 公開함으로써 一般人이 받는 利益, 즉 公益과 公開의 對價로 創作者에게 許與하는 獨占排他的 인 權利인 工業所有權이 서로 均衡을 이루도록 배려한다는데 工業所有權制度의 妙味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工業所有權制度는 特許權者 및 商標權者 등의 개인적인 權利를 保護하여 주는 한편 사회 전체의 公益도 함께 保護하여 주는 것이므로 모든 創作技術이나 商標를 保護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즉 公益을 해치거나 特定人에게 獨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工業所有權을 許與하지 않거나 그 權利를 國家가 收用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工業所有權이 주어지더라도 그 効力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法으로 規定하여 둠으로써 公益과 私益의 調和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特許權 및 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의 대상인 創作이라도 營利的인 目的이 아닌 家事用으로 사용하면 特許權의 權利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든가, 他人의 登錄商標라고 하더라도 自己의 姓名이나 商號에 사용하면 不正競爭의 目的이 없는 한 商標權의 効力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계속>